

영등포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10.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民 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3호로 2016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조제2항)
- 나.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확대 및 상한금액 삭제(안 제11조)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6조,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불필요한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안 제2조 제1항)
-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영등포구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였고, (안 제2조제2항)
-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을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에서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하여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안 제1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